

(별표4) <신설 2006.8.22., 개정 2009.7.17., 2009.8.21., 2014.12.18., 2017.2.1., 2019.8.28.>

공로장학금(학술,체육,표창 등) 지급기준표

지급금액 구분	40만원	35만원	30만원	25만원	20만원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지방대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표창수상자(선행, 효행)	정부 기관장	각 시도 단체장급	각 군구 단체장급		

※ 1. 단체전(2인 이상)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대회입상자의 등급은 주최(주관)기관에서 공시한 시상내역(순서)을 기준으로 정하며, 별도의 명시나 순위가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동일대회에서 중복입상의 경우 상위 입상만 인정)

3. <삭제>

4.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범위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기관(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장급 이상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해당 상을 수여하는 경진대회 또는 3개국 이상 참여하는 경진대회로 정한다.

5. 지방대회 범위는 기초자치단체장급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 술지를 보유한 단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해당 상을 수여하는 경진대회로 정한다.

6. 장학금액은 참여자 인원 전체에게 균등배분하여 산정하며 시상일을 기준으로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교내 공로장학금 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학기 등록자에 한하여 주관부서에서 결정한다.

7. 교내 경진대회 등 기타 공로장학금은 지급기준표를 참고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